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99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최수진・박정훈・신성범

김장겸 • 박충권 • 이상휘

김예지 · 김선교 · 성일종

구자근 · 임이자 · 최형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처 또는 기관의 유사성 및 연관성을 기준으로 소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연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상임위원회 운영이 방송통신에 집중되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제37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1항제18호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18. 미디어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			
항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에 속하는 사항	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u>속하는 사항</u>	<u>속하는 사항</u>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에			
<u>속하는 사항</u>			
7. ~ 17. (생 략)	7. ~ 17.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18. 미디어위원회</u>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		
	<u>는 사항</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